

# 교직원 복지 규정

- 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9. 1
- 개정 : 2019. 11.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복지지원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 대학 법인에 속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지원
- ② 교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③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④ 교직원 통근버스 지원
- ⑤ 교직원 생일 기념품 지급
- ⑥ 교직원 상해, 질병, 재해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 ⑦ 교직원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 (동호회 등)
- ⑧ 행정부서 야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식대 지원
- ⑨ 교직원 간담회 경비 지원
- ⑩ 정년퇴직 및 퇴임 교직원 기념품 지급
- ⑪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복지 지원

**제4조(지원 금액)** ①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지원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② [별표]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 지원)**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제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lt;개정 2019. 11. 29&gt;

복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 고
본 대학 법인에 속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지원	등록금 전액	
교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공립학교기준 수업료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보험 가입금액	
교직원 생일 기념품 지급	개인별 최대 100,000원	
교직원 상해, 질병, 재해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최대 100,000,000원	
교직원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 (동호회 등)	활동회별 연 최대 10,000,000원	
행정부서 야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식대 지원	실비 지원	
교직원 간담회 경비 지원	간담회별 최대 10,000,000원	
정년퇴직 및 퇴임 교직원 감사패 및 기념품 지급	감사패 및 꽃다발 : 실비 기념품 : 1,000,000원	